

재입법예고안

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개정령(안)

2010. 11.

행 정 안 전 부

1. 의결주문

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‘기록물관리 분야 행정내부규제 개선과제’ 후속조치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공직진입 문호를 확대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요건을 기록관리학, 역사학, 문헌정보학 학사학위자에게도 부여하되, 전문성 검증을 위해 전문자격시험 제도 도입(안 제78조제1항, 제3항 개정 및 부칙신설)
- (1)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대상에 기록관리학 학사학위자를 추가하고, 역사학, 문헌정보학 석사학위자를 학사학위자로 완화
 - (2) 기록관리학 학사학위자, 유관분야 학사(역사학·문헌정보학)학위 이상자를 대상으로 전문요원 자격시험 제도 실시
 - (3)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시험의 시험 과목,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과 행정안전부장관

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의 기준
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

- (4)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시험의 시행일을 영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, 종전 규정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와 이수 중인 자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부칙에 경과규정 신설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(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(2) 입법예고(2006. 9. 00 ~ 9. 00) 결과, 특기할
사항 없음

(3) 규제심사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
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및 역사학,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,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

제7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“기록물관리학”을 각각 “기준을 충족하는 기록관리학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시험의 시험 과목,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시험은 공포 후 2

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78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와 이수 중인 자는 제78조제1항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8조(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과 배치) ①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<u>역사학,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</u></p> <p>3. <u>검찰총장이 정하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</u></p> <p>4. <u>육군·해군·공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군인 또는 군무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</u></p>	<p>제78조(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과 배치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및 역사학,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,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</u></p> <p>3. ----- ----- ----- <u>기준을 충족하는 기록관리학</u> ----- -----</p> <p>4. ----- ----- ----- ----- <u>기준을 충족하는 기록관리</u></p>

수한 자

5.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경찰공무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

② (생략)

③ 제1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
④ (생략)

학 -----

5. -----

----- 기준
을 충족하는 기록관리학 ----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제1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시험의 시험 과목,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
④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	
연 락 처	(042) 481 - 6226